

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

※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, “[]”에는 해당되는 곳에 “√”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즉시
수급권자	성명			주민등록번호	
	전화번호(자택)		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		
	전자우편주소				
급여종류	[] 노령연금 [] 장애연금 [] 조기노령연금 [] 유족연금 [] 특례노령연금 [] 반환일시금 [] 분할연금 [] 사망일시금				
수급권자 내용변경	변경항목	변경 전	변경 후	변 경 일 자	
				년 월 일	
				년 월 일	
				년 월 일	
				년 월 일	
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 내용변경	성명	주민등록번호	수급권자와의 관계	사유발생일 (YYYY.MM.DD)	변 경 내 용
대리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	
	전화번호(자택)		휴대전화번호	수급권자와의 관계	
	주소				
	수급권자 확인		(인)	기관장 확인	
			(인)		

「국민연금법 시행규칙」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(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3.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<성명,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> -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) - 주민등록표 등본 1부(공단에서 주소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) <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> - 제출서류 없음 <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변경된 경우> -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, 태아의 출생, 사망, 이혼 또는 입양, 파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등재된 것을 말합니다) 1부 <수급권자가 국외체류 사유로 인하여 일정 범위의 친족인 대리인을 통하여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> - 임의위임장 1부 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, 배우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, 형제자매의 배우자, 직계비속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(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) 1부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 - 수급권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는 반드시 적어야 하며,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주소를 적습니다. 전자우편주소(e-mail) 기재는 선택사항입니다.
 - "변경항목"란은 "수급권자"란의 항목 중 변경되는 항목(예: 성명, 주소)을 기재합니다.
 - "변경 전" 및 "변경 후"란은 변경 전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 - "변경일자"란은 변경된 일자를 기재합니다.
 - "지급받으려는 금융기관(은행, 농협, 수협, 축협, 우체국 등)" 및 "계좌번호"는 입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.
 - "대리인"란은 수급권자의 해외체류, 수감 등으로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적고,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, 대리인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.
- ※ "기관장 확인"란의 기관장은 재외공관장, 교도소장 등을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